

#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9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이민옥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남창진, 박강산,  
박수빈, 박영한, 박칠성,  
송경택, 이영실, 이용균,  
장태용, 전병주, 최기찬,  
최재란 의원(16명)

## 1. 제안이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 4호)
- 나. 실태조사의 대상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 8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을”을 “수립 등 을”로, “가사노동자”를 “가사노동자 및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u>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u>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실태조사) ① ----- ----- <u>수립</u> 등을 -----</p> <p>-- <u>가사노동자 및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u>----- -----.</p> <p>② (현행과 같음)</p>